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47

발의연월일: 2021. 1. 18.

발 의 자:김민기·강득구·김영호

박상혁 • 변재일 • 안규백

용혜인 • 이규민 • 이탄희

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의 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 도록 하고,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 명단을 기준으로 투표소마다 총 8명의 투표참관인이 지정되도록 하되, 신고된 인원수가 8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한 사람을 투표참관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관인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후보자가 많은 경우 일부 후보자측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이 한 명도 선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 보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으로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각각 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음. 그러나 투표참관인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그 근무 시간이 12시간에 달하며, 개표참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표가 투표일을 넘어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보다 현실적인 수당 책정을 통해 참관인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 후보자별로 선정·신고한 사람이 모두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인원 상한을 삭제하고,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에게 시간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1조, 제162조, 제181조 및 제213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書式기타"를 "서식, 투표참관인의 시간당 수당 지급액, 그 밖에"로 한다.

- 이 경우 투표참관인에게는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투표참관인으로한다.

제162조제4항 전단 중 "제161조제6항부터"를 "제16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부터"로 한다.

제18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書式 기타"를 "서식, 개표참관인의 시간당 수당 지급액, 그 밖에"로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에게는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3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第161條(投票參觀) ① ---

第161條(投票參觀) ① 투표관리관 은 投票參觀人으로 하여금 投 票用紙의 交付狀況과 投票狀況 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후 단 신설>

② (생략)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 명으로 하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 여 지정한 者를 投票參觀人으 로 한다. 다만, 投票參觀人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 는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 가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區・ 市・郡의 區域안에 居住하는 選擧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 한 者를 投票參觀人으로 한다.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 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 시・군의 구역에 거주하는 선 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 한 사람을 투표참관인으로 한 다.

<삭 제>

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參觀人을 지정하는 경우에 候補者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1명씩 우선 선정한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候補者數가 8명에 미달하되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1명씩 선정한 者를우선 지정한후 나머지 人員은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 ⑤ ~ ③ (생 략)
- ④ 投票參觀人申告書의 <u>書式</u><u>기타</u>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 ③ ㅈ (생 략)
 - ④ 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 ⑤ (생략)

⑤ ~ ⑬ (현행과 같음	-)
1 4	<u>서식,</u>
투표참관인의 시간당	수당 지
급액, 그 밖에	
제162조(사전투표참관)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u>제6항부터</u>	
⑤ (현행과 같음)	

제181조(개표참관) ①區・市・郡 ス 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 으로 하여금 開票所안에서 開 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 다. <후단 신설>

② ~ ① (생 략)

⑩開票參觀人申告書의 書式 기 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 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등에 관한 特例) ① (생 략)

②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 | <삭 제> 정에 있어 제161조제4항의 "후 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후보자별"은 "정당·후보자별" 로 본다.

③ (생략)

④同時選擧에 있어서 사전투표 | <삭 제> 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 第3 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申 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 에는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政 黨이 선정・申告한 者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人員은 무소

제181조(개표참관) ①
이 경우 개표참관인에게는 시
간당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① (현행과 같음)
① <u>서식,</u> 개
표참관인의 시간당 수당 지급
<u>액, 그 밖에</u>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 (현행과 같 음)

③ (현행과 같음)

속후보자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抽籤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政黨이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政黨順位의 앞順位의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